

## 제5장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 제1절 경수로사업 추진배경

### 제2절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1. 경수로사업 기반 조성
2.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간 협상
3. 본공사 및 북한인력 훈련
4. 재원조달
5. 통행·통신 등 사업지원체계 강화

### 제3절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 제1절 경수로사업 추진 배경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원자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구 소련과 협력협정을 체결한 뒤 원자력 전문가들을 양성해 왔다. 1984년 북한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구 소련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소련은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에게 핵비확산 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가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하였으나, 의무사항인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안전조치협정의 체결은 거부해 오다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한 뒤인 1992년 1월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같은해 5월에 보유중인 핵시설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IAEA에 제출하였다.

IAEA가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6차에 걸쳐 실시한 임시사찰 결과, 북한이 주장한 방사화학실험실이 사실상 재처리시설이며,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과 IAEA의 추정치간에 중대한 불일치가 나타났고, 미신고시설 2곳은 재처리한 핵폐기물 저장소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찰 결과에 따라 IAEA 이사회는 1993년 2월 북한의 특별사찰 수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1993년 3월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NPT를 탈퇴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그 이후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NPT 복귀와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요구하고, 모든 UN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함에 따라, 핵비확산체제를 주도해 온 미국이 북한과 두차례 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의 NPT 탈퇴유보 및 핵문제 해결을 위해 IAEA 와의 협의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IAEA 사찰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함에 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가 추진되고 한반도 정세가 점

차 급박해 지고 있는 가운데,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994년 6월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면담하였으며, 이때 김일성은 미·북 회담 개최시 핵연료봉 재처리를 유보하고, 핵안전조치의 유지 및 경수로 도입시 흑연감속로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북 회담을 통해 북한이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핵관련 시설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국제 컨소시엄을 통해 총 발전량 2,000MWe의 경수로 발전소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이 1994년 10월 21일 서명·발효되었다.

#### <제네바 기본합의문 요지>

- ①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를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로 대체
  - o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 발전용량 약 2,000MWe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
  - o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동결에 따른 대체에너지(연간 중유 50만톤) 제공
  - o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
- ② 양측은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 추구
  - o 무역 및 투자제한을 완화시켜 나가는 조치 실시
  - o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 개설
  - o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
- ③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
  - o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을 공식 보장
  - o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조치 실시
  - o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
- ④ 양측은 국제적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
  - o 북한은 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조약상의 안전조치 협정 이행
  - o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 즉시,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임시 일반사찰 재개
  - o 경수로 주요 핵심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IAEA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이행

## 제2절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 1. 경수로사업 기반 조성

1994년 10월 미·북간의 제네바기본합의에 기초하여 시작된 대북 경수로사업은 1995년 3월 한국, 미국, 일본에 의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가 설립되면서 추진체계를 갖추었다. KEDO의 목적은 1,000MWe 용량의 한국표준형 원전 2기의 제공에 따른 재원조달과 공급, 1호기 완성시까지 대체에너지 제공, 기타 제네바기본합의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는 것이다.

1995년 12월 15일 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되고, 1997년 7월에 경수로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후속의정서와 각종 세부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KEDO는 경수로 공사를 착공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KEDO 집행이사국간의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KEDO는 경수로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우선 부지준비공사를 추진키로 하고, 부지준비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우리 정부가 KEDO에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다. 부지준비공사는 경수로 건설부지를 정지하고, 숙소·사무실·식당·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도로·통신 관련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1997년 8월 19일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부지에서 부지준비공사 착공식이 거행됨으로써 경수로사업은 협상단계에서 시행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부지준비공사와 함께 KEDO는 집행이사국간 재원분담 결의 협의와 한국전력공사와의 주계약 협상을 진행하였다.

당시 경수로건설의 본공사에 착수하려면 KEDO와 1996년 3월 주계약자로 선정된 한전간에 주계약(Turn-key Contract, TKC)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주계약은 한전이 일괄도급방식으로 한국표준형 경수로발전소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제반조건들을 규정하는 기본계약으로서, KEDO와 한전은 1997년 10월부터 15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과 수차례의 비공식 실무접촉을 통해 방대한 주계약 조건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1999년 12월 15일 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주계약의 발효조건인 KEDO와 한국수출입은행간 융자 계약이 1999년 12월 15일에, KEDO와 일본 국제협력은행간 융자 계약은 2000년 1월 31일에 각각 체결됨에 따라 2000년 2월 3일 주계약이 발효되었다.

## 2.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간 협상

### 가. 경수로공급협정 및 후속의정서 체결

KEDO와 북한은 1995년 12월 15일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하여 경수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1996년 4월부터는 「경수로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의정서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통행 의정서」, 「통신 의정서」, 「부지 의정서」, 「서비스 의정서」, 「미지급 시 조치 의정서」, 「훈련 의정서」, 「품질보장 및 보증 의정서」 등 8개 의정서가 체결·발효되었다.

2002년에는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피해 발생시 책임범위와 배상체계 등을 규정하게 될 「원자력손해배상 의정서」 협상이 5월, 7월, 9월, 10월 등 4차례 개최되었다. 이 의정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북한측에는 비교적 생소한 것이어서 KEDO측은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의정서의 기본개념과 손해배상과 관련한 원칙 등에 대해 2000년 8월, 2001년 4월 등 2차례의 대북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현재까지 협상을 통해 상당부분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제고했으나, 부지내 재산손해, 보험 및 국제협약 가입 등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KEDO와 북한간에는 경수로사업이 진전되는데 따라 「인도일정 및 조치 의정서」 등 「경수로공급협정」 이행에 필요한 나머지 의정서들도 협상을 통해 순차적으로 체결해 나갈 예정이다.

「경수로공급협정」 이행을 위해 현재까지 체결·발효된 후속 의정서와 앞으로 건설공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체결해야 할 잔여 의정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후속의정서 협상 현황〉

|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 거               | 비 고                      |
|----------------|---------------------------------------|-------------------|--------------------------|
| 특권 · 면제 및 영사보호 | KEDO의 법적 지위, KEDO 인원에 대한 신변보호 등       | 경수로공급협정 제4조 6, 7항 | 1996.7.11<br>발효          |
| 통 행            | KEDO인원의 부지접근(자유로운 출입절차) 및 효율적 통행로 개설  | 경수로공급협정 제9조 3, 6항 | "                        |
| 통 신            | 부지내외로의 효율적인 통신수단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          | 경수로공급협정 제9조 5, 6항 | "                        |
| 부 지            | 부지인수 및 부지접근 · 사용에 관련된 세부사항            | 경수로공급협정 제5조 3항    | 1997.1.8<br>발효           |
| 서비 스           | 북한의 노무 · 물자 · 시설과 기타 서비스 공급조건         | 경수로공급협정 제9조 4, 6항 | "                        |
| 미지급시 조 치       | 상환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 경수로공급협정 제16조 3항   | 1997.6.24<br>발효          |
| 훈 련            | 경수로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북한 인력의 훈련계획         | 경수로공급협정 제7조 2항    | 2000.10.20<br>발효         |
| 품질보장 및 보증      | 경수로 품질 및 성능 보장                        | 경수로공급협정 제6조 4항    | 2001.12.3<br>발효          |
| 원자력 손해배상       | 핵사고시 보장장치에 관한 세부 사항                   | 경수로공급협정 제11조 2항   | 2회 설명회<br>2002년 4회<br>협상 |
| 인도일정 및 조치      | 북한의 핵동결 및 해체조치와 경 수로 공급일정             | 경수로공급협정 제3조 3항    | 미 협의                     |
| 상환조건           | 경수로 건설대금의 상환금액 및 조건                   | 경수로공급협정 제2조 4항    | "                        |
| 사용후 연료         | 사용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 · 처리 및 제3국 이전에 관한 세부사항 | 경수로공급협정 제8조 4항    | "                        |
| 핵 안전 및 규제      | 경수로 완공후 정기 안전점검을 위한 절차와 일정            | 경수로공급협정 제10조 5항   | "                        |

## 나. 현안 관련 실무협상 추진

KEDO는 이미 합의된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측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상을 수시로 개최해 왔다.

우선 KEDO·북한간에는 1998년 이후 연간 수차례의 고위전문가 회의를 통해 효율적·경제적 해로이용 문제, 북한 근로자 임금수준, KEDO 인원의 사기진작 방안 등 다양한 제반 현안들을 협의하였다. 2001년 이후 총 4회 개최된 고위전문가 회의시 노무인력, 독자위성통신망 설치, 소외전력 구성, 경수로 안전문제 등 사업추진을 위한 현안문제들을 논의하였으며, 2002년 5월 회의시 KEDO측에서는 경수로 건설일정표를 북한측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북한측이 1999년 9월 고위전문가 회의에서 노무인력 임금을 이미 합의한 110불에서 600불로 인상을 요구한 이래, 노무인력 임금문제는 KEDO·북한간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임금문제 미 타결을 이유로 북한측은 2000년 4월에 일방적으로 북측 근로자 200명중 100명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 이에 따라 KEDO는 2001년부터 우즈벡 인력 600여명을 투입하여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한편, 그동안 고위급회담(2회, 2001년 3월, 6월)과 카트만 KEDO 사무총장 방북시 협의(2001년 12월), 전문가회의(2회, 2002년 6월, 9월) 등을 통해 이견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쌍방의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품질보증, 원자력안전, 북측 인력 훈련, 통행·통신 개선 문제 등 실무적인 문제들은 KEDO·북한간 실무전문가 협상을 개최하거나, 부지현장의 KEDO 금호사무소, 한전 및 합동시공단의 현장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경수로대상사업국과 수시로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

## 3. 본공사 및 북한인력 훈련

KEDO와 한전간 주계약이 발효됨에 따라 경수로건설 공사는 본공사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진행해오던 부지정지공사는 2001년 8월에 완료하고 취수방파제와 항만시설인 물양장(物揚場) 등 대규모 토목공사도 2002년 상반기중 완공하였다. 그리고 경수로의 발전소 설계 및 건설기자재의 발주·제작도 공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KEDO측이 제출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및 환경영향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2001년 9월 1일 건설허가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2001년 9월 3일 착공하였다. 2002년에도 발전소 본관 1·2호기에 대한 기초굴착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8월 3일부터 1호기에 대한 최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고, 8월 7일에는 KEDO 집행이사국 및 북한측 대표와 세계의 주요언론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호부지에서 최초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2003년 1월말 현재 1·2호기 시공은 1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원자로 설계 48.5%, 각종 기자재 제작·구매 34.3% 등을 포함한 종합공정의 진척도는 약 28.3%를 보이고 있다.

현재 경수로 건설공사에는 한국전력공사를 주계약자로 하여 현대건설, 대우건설, 동아건설, 두산중공업으로 이루어진 합동시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3년 1월말 현재 남측 인력 713명, 북측 인력 97명, 우즈벡 인력 583명 등 약 1,400명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다. 또한 불도저, 포크레인 등 중장비와 차량 등 400여대의 장비가 공사에 투입되어 있다.

한편 2000년 12월 체결된 「훈련 의정서」에 따라 2001년 12월에 북한의 김희문 경수로대상사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원자력분야 고위관계자 19명이 약 2주간에 걸쳐 국내 원전 관련시설 및 기관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였다. 2002년에는 북한측 원전 운영인력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여, 금호부지내에 완공된 금호원자력교육원에서 2002년 6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4개월여간 북한인력 123명을 대상으로 이론기초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할 북한측 규제요원들에 대한 훈련도 처음으로 실시되어, 2002년 7월 2일부터 27일까지 대전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25명의 북한측 기술진이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기초교육을 이수하였다. 금호부지내 건설현장에서는 합동검사, 사용전검사 등 품질보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도 병행되고 있다.

## 4. 재원조달

### 가. 재원분담결의

경수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비의 안정적인 조달이다. 이를 위해 KEDO 집행이사국들은 1998년 11월 9일 예상사업비를 46억달러(환율 1달러=1,100원, 물가상승률 연 2.1%)로 하는 「재원분담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실제공사비의 70%(예상사업비 46억달러 기준 32.2억달러, 3조 5,420억원)를 원화로, 일본은 10억달러(1,165 억엔) 상당을 엔화로 기여하기로 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은 약속한 기여금액이 최대치(maximum)임을 명기함으로써 부족분 조달시의 추가적인 부담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미국은 중유비용과 KEDO의 여타 소요재원을 조달하는데 노력하고 KEDO 집행이사국들의 기여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 조달에 있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EU는 1997년 9월 KEDO 가입당시 약속한 7,500만 유로를 이미 기여하고, 2001년 이후 매년 2,000만 유로를 추가로 기여하고 있다.

### 나. 재원조달 및 공사비 분담

경수로사업비에 대한 「재원분담결의」가 채택된 이후 정부는 경수로사업비 분담분에 대한 국내 재원조달방안 마련에 착수하였

다. 정부는 재원조달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형평성에 부합되는 대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정형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전기요금 납부금제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당초에는 1999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재원조달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간 합의실패로 국회심의가 지연되고 있던 중 2000년 5월 30일 제15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

제16대 국회에 들어와 관계부처 및 당정간 협의를 통해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재정에서 분담하는 방안과 전기요금 납부금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였다. 그러나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당분간 국채발행을 통해 소요재원을 충당하기로 하고, 근본적인 재원조달방안은 향후 경제상황, 재정여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키로 하였다.

현재 우리정부가 분담하는 공사비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3년 1월까지 국채발행 규모는 총 1조 2,597억원이다. 연도별 발행규모는 1999년 1,498억원, 2000년 2,549억원, 2001년 3,100억원, 2002년 5,050억원, 2003년 1월 400억원을 발행하였다.

한편, 2000년 2월 3일 주계약(TKC)이 발효되고, 본공사가 착수됨에 따라 경수로건설 공사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공사비로 2003년 1월까지 우리 정부는 7억 8,800만불, 일본은 3억 606만불, EU는 1,762만불을 분담하여 총 11억 1,168만불의 건설공사비를 주계약자인 한전에 지급하였다.

#### 【건설공사비 국가별 분담현황('00.2~'03.1)】

(단위: 만달러)

| 국 가 | 한 국    | 일 본    | E U   | 합 계     |
|-----|--------|--------|-------|---------|
| 금 액 | 78,800 | 30,606 | 1,762 | 111,168 |

## 5. 통행·통신 등 사업지원체계 강화

우리 정부와 KEDO는 본공사 착수이후 공사물량이 증가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수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우리 근로자들이 북한 현지에 상주하면서 공사에 참여하는 동안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공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수로 공사 이외에 숙소 등 생활기반시설과 후생관 등 각종 편의시설 공사를 병행하고 있다.

생활부지에는 근로자 숙소 및 식당·목욕탕·노래방·독서실 등 편의시설과 테니스장·운동장·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수영장·이발소·독서실 등을 갖춘 후생관도 추가로 건설하고, 교회·법당·성당 등 종교시설과 630여평 규모의 현대적 병원시설도 완공하였다.

또한, 경수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름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속초-양화간 해상통행로를 통한 객화선(客貨船) 「대원카타마란호」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운행해 오다가, 2001년 9월부터 국제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한겨레호」를 신규 제작하여 주 1회 정기운항하고 있다.

이와 함께 KEDO는 경수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남북간 직항공로 개설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2002년 5월 북한 항공관계자의 국내 공항시설 답사 등을 거쳐 7월 20일 우리측 양양공항과 북한 함경남도 선덕공항간의 직항공로를 정식으로 개설하였다.

부지에서는 위성TV 수신장치를 통하여 국내외의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 등 20여개 채널을 시청하고 있으며, 국내-부지간 16회선의 통신회선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이 국내 가족들과 자유롭게 통화하고 있다. 향후 설계자료 송수신, 화상회의 등 공정진척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용량의 통신수요를 소화하기 위

해 독자위성통신망 구축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도 진행중이다.

한편, 경수로 부지에 근무하는 남북한 근로자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KEDO는 「KEDO 행동규범(Code Of Conduct)」 및 「무질서행위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질서유지활동을 위해 2000년 2월부터 「KEDO 질서유지대」를 파견하여 운영해 왔다. 2003년 1월말 현재 우리 인원 58명, 우즈벡인 4명 등 62명의 질서유지대원이 근무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경수로 현장에 근무하게 될 우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 방북안내교육을 통해 「KEDO 행동규범」과 기타 북한 체류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방북전에 미리 알려 현장적응에 도움을 주는 한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연한 태도로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사 초기에 오랜 분단으로 인한 체제 및 이념의 차이, 상호이해 부족 등으로 다소간의 갈등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대방의 체제와 관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서로 협조하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동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감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 제3절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북한의 핵문제는 1994년 10월 미·북간 제네바 기본합의를 토대로 북한의 핵 관련시설 동결과 KEDO의 중유공급, 경수로 건설 등 합의의 기본적인 틀이 유지됨으로써 해결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2002년 10월,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시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존재를 언급함에 따라 북한 핵문제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사실을 2002년 10월 17일 공개하면서,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도 같은 날 북한의 어떠한 핵 개발에도 반대하며 북한에 대해 남북 및 국제사회와 맺은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2002년 10월 25일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측이 요구한 “핵 우선 폐기” 주장을 반박하면서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시 안보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후 2002년 10월 27일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중 한·미·일 정상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제네바 기본합의, NPT, IAEA 협정,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국제적 합의의 중대한 위반으로, 북한이 국제적 합의 준수 및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면서, 이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후 한·미·일은 이 같은 원칙을 유지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

한편, KEDO 차원에서는 2002년 11월 14일 한국, 미국, 일본,

EU 대표가 참석한 KEDO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여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와 함께, 북한의 KEDO 및 KEDO 집행이사국과의 향후 관계와 상호활동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제거에 달려있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 성명에서 KEDO는 12월 이후의 중유 공급은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중단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 핵문제 전개상황을 보아가면서 여타 KEDO 활동도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KEDO의 중유제공 중단조치에 반발하여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핵시설 동결 해제 및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제네바 기본합의에 의해 동결되어 있던 각종 핵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에 대한 제거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은 12월 27일 방사화학실험실 재가동 및 IAEA사찰요원 추방을 결정한 이후 12월 31일 IAEA 사찰요원을 실제로 철수시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정부성명을 통해 NPT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북한의 핵 비확산 의무이행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로서 중국과 러시아도 2002년 12월 2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한의 핵동결 원상복구 및 핵개발 계획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2003년 1월 6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적인 약속 위반으로 7천만 민족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1월,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APEC 정상회담을 통해 밝힌 평화적

인 북핵 문제 해결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 중국에도 특사 파견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대화 채널을 이용한 직접적인 대북 설득도 병행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 대두 직후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2002년 10월 19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단독면담시 핵문제의 해결을 직접 촉구하는 한편, 공동보도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3년 1월 21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도 “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하여 쌍방의 입장 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고 합의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 간의 협력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2003년 1월 27일에서 29일까지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측 고위인사들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이의 해소를 위한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직접 설득하였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김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우리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조언에 대해 감사하며 검토후 적절한 방법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철도·도로 실무협의회 등 각종 대화 계기시 북한의 핵 우선 포기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하여 문제 해결의 실

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